

2017)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시리즈 1권-관계법규 1차 정오표 [2017.4.13]

[※ 최근 개정법령 게재는 생략하고 해당 조문의 주요내용을 공지합니다.]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13페이지 예제문제 02 ④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30일 이상[삭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8페이지 참고 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²·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소요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1차에너지소요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사용량</th> <th style="text-align: center;">1차에너지사용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난 방</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 시 가 스 (a)</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급 탕</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 역 냉·난방 (b)</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냉 방</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열 (a + b)</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 명</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 기 (c)</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환 기</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 (a + b + c)</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온실가스 배출량 (kg/m²·년)</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온실가스 배출량 (kg/m²·년)</td> <td></td> <td></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표준에너지사용량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00년 0분기</th> <th style="text-align: center;">00년 0분기</th> <th style="text-align: center;">00년 0분기</th> <th style="text-align: center;">00년 0분기</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 ² ·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 시 가 스 (a)			급 탕			지 역 냉·난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환 기			합 계 (a + b + c)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표준에너지사용량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율(%)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 ² ·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 시 가 스 (a)																																																								
급 탕			지 역 냉·난방 (b)																																																								
냉 방			열 (a + b)																																																								
조 명			전 기 (c)																																																								
환 기			합 계 (a + b + c)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표준에너지사용량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율(%)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00년 0분기																																																							
79페이지 참고 표	<p><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매매·임대 거래 시 에너지소요량,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 대 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등 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A</th> <th style="text-align: center;">B</th> <th style="text-align: center;">C</th> <th style="text-align: center;">D</th> <th style="text-align: center;">E</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d style="text-align: center;">70~90%</td> <td style="text-align: center;">90~1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13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업무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d style="text-align: center;">55~85%</td> <td style="text-align: center;">85~1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15~145%</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td> </tr> </tbody> </table>	등 급	A	B	C	D	E	공동주택	~70%	70~90%	90~110%	110~130%	130%~	업무시설	~55%	55~85%	85~115%	115~145%	145%~																																								
등 급	A	B	C	D	E																																																						
공동주택	~70%	70~90%	90~110%	110~130%	130%~																																																						
업무시설	~55%	55~85%	85~115%	115~145%	145%~																																																						
94페이지 3) 시범사업의 적법성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법 제13조①) 2.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법 제15조①) 3. 녹색건축의 인증(법 제16조⑤)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법 제17조④) 																																																										
예제문제 07 해설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범사업의 적법성 검토</p> <p>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기준(법 제13조①) 2.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법 제15조①) 3. 녹색건축의 인증(법 제16조④)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법 제17조④)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121페이지 요점 과태료 (1) 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부과금액</th> <th>부과권자</th> </tr> </thead> </table>	위반행위	부과금액	부과권자	100만원	허가권자
위반행위	부과금액	부과권자				
	4.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허가권자			
	5.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허가권자			
	6.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허가권자			
	7.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300만원	허가권자			
134페이지 3) 다중이용건축물	<p>1. 16층 이상 건축물</p> <p>2. 다음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p> <p>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삭제), 동물원, 식물원 제외)</p> <p>② 종교시설</p> <p>③ 판매시설</p> <p>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p> <p>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p> <p>⑥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p>					
	*이후 교재 내용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160페이지 요점 건축물의 용도 (1)	구분	내용	기타			
	가. 단독 주택	-	-			
	나. 다중 주택	<p>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p> <p>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가능, 취사시설은 설치불가)</p> <p>③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지하층 제외) 이하일 것</p>	-			
	다. 다가구 주택	<p>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p> <p>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p> <p>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p>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4. 공관	-	-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p>161페이지 요점 건축물의 용도 (2) 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가. 아파트</td> <td>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td> <td></td> </tr> <tr> <td>나. 연립주택</td> <td>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의 합계가 660m²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td> <td>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td> </tr> <tr> <td>다. 다세대 주택</td> <td>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td> <td>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td> </tr> <tr> <td>라. 기숙사 (학생복지 주택포함)</td> <td>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타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의 합계가 660m ²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 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라. 기숙사 (학생복지 주택포함)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구분	내용	기타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의 합계가 660m ²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다.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 ²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라. 기숙사 (학생복지 주택포함)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p>161페이지 오른쪽 포인트 표</p>	<p>■ 주택의 규모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구분</th> <th>규모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단 독 주 택</td> <td>다중 주택</td> <td>• 용도면적 330m²이하 • 3개층 이하</td> </tr> <tr> <td>다가구 주택</td> <td>•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²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td> </tr> <tr> <td>공 동 주 택</td> <td>아파트 • 5개층 이상</td> </tr> <tr> <td></td> <td>연립 주택</td> <td>• 4개층 이하 • 동(棟)당 용도바닥 면적의 합계 660m² 초과</td> </tr> <tr> <td></td> <td>다세대 주택</td> <td>• 4개층 이하 • 동(棟)당 용도바닥 면적의 합계 660m²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규모기준	단 독 주 택	다중 주택	• 용도면적 330m ² 이하 • 3개층 이하	다가구 주택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공 동 주 택	아파트 • 5개층 이상		연립 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용도바닥 면적의 합계 660m ² 초과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용도바닥 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구분	규모기준																	
단 독 주 택	다중 주택	• 용도면적 330m ² 이하 • 3개층 이하																	
	다가구 주택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공 동 주 택	아파트 • 5개층 이상																	
	연립 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용도바닥 면적의 합계 660m ² 초과																	
	다세대 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용도바닥 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p>164페이지 (12) 수련시설</p>	<p>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다. 유스호스텔</p> <p>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² 이상인 야영장 시설</p>																		
<p>169페이지 참고 1. 주택의 규모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단 독 주 택</th> <th colspan="2">공 동 주 택</th> </tr> </thead> <tbody> <tr> <td>• 다중주택</td> <td>• 용도바닥면적 330m² 이하 • 3개층 이하</td> <td>아파트</td> <td>• 5개층 이상</td> </tr> <tr> <td rowspan="2">• 다가구주택</td> <td rowspan="2">•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²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td> <td>연립주택</td> <td>• 4개층 이하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² 초과</td> </tr> <tr> <td>다세대주택</td> <td>• 4개층 이하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² 이하</td> </tr> </tbody> </table>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 다중주택	• 용도바닥면적 330m ² 이하 • 3개층 이하	아파트	• 5개층 이상	• 다가구주택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초과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 다중주택	• 용도바닥면적 330m ² 이하 • 3개층 이하	아파트	• 5개층 이상																
• 다가구주택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초과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동(棟)당 바닥면적의 합계 660m ² 이하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197페이지 2) 평가절차	③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토요일 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5페이지 5)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항 목</th> <th>점검 내용(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th> </tr> </thead> <tbody> <tr> <td>5. 건축설비</td> <td>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td> </tr> </tbody> </table>		항 목	점검 내용(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항 목	점검 내용(적합여부 확인 대상 규정)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256페이지 예제문제 01 보기 및 해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td> <td style="width: 50%;">㉡ 연면적이 500m² 이상인 건축물</td> </tr> <tr> <td>㉢ 높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td> <td>㉣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td> </tr> </table> <p>☐ 해설 구조안전의 확인대상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500m² 이상 · 층수 : 2층 이상 · 건축물 높이 : 13m 이상 · 처마 높이 : 9m 이상 · 경간 : 10m 이상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m ²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m ²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256페이지 예제문제 02 지문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다중이용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④ 연면적 10,000m ² 이상인 업무시설																																																																																																
373페이지 참고 표	<div style="text-align: right;">(단위 : W/m²·K)</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건축물의 부위</th> <th rowspan="2">지역</th> <th>중부지역¹⁾</th> <th>남부지역²⁾</th> <th>제주도</th> </tr> <tr> <th>지역</th> <th>중부지역¹⁾</th> <th>남부지역²⁾</th> <th>제주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거실의 외벽</td> <td rowspan="2">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공동주택</td> <td>0.210 이하</td> <td>0.260 이하</td> <td>0.360 이하</td> </tr> <tr> <td>공동주택 외</td> <td>0.260 이하</td> <td>0.320 이하</td> <td>0.430 이하</td> </tr> <tr> <td rowspan="2">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공동주택</td> <td>0.300 이하</td> <td>0.370 이하</td> <td>0.520 이하</td> </tr> <tr> <td>공동주택 외</td> <td>0.360 이하</td> <td>0.450 이하</td> <td>0.620 이하</td> </tr> <tr> <td rowspan="2">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td> <td>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0.150 이하</td> <td>0.180 이하</td> <td>0.250 이하</td> </tr> <tr> <td>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0.220 이하</td> <td>0.260 이하</td> <td>0.350 이하</td> </tr> <tr> <td rowspan="4">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td> <td rowspan="2">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바닥난방인 경우</td> <td>0.180 이하</td> <td>0.220 이하</td> <td>0.290 이하</td> </tr> <tr> <td>바닥난방이 아닌 경우</td> <td>0.220 이하</td> <td>0.250 이하</td> <td>0.330 이하</td> </tr> <tr> <td rowspan="2">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바닥난방인 경우</td> <td>0.260 이하</td> <td>0.310 이하</td> <td>0.410 이하</td> </tr> <tr> <td>바닥난방이 아닌 경우</td> <td>0.300 이하</td> <td>0.350 이하</td> <td>0.470 이하</td> </tr> <tr> <td colspan="2">바닥난방인 층간바닥</td> <td></td> <td>0.810 이하</td> <td>0.810 이하</td> <td>0.810 이하</td> </tr> <tr> <td rowspan="4">창 및 문</td> <td rowspan="2">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공동주택</td> <td>1.200 이하</td> <td>1.400 이하</td> <td>2.000 이하</td> </tr> <tr> <td>공동주택 외</td> <td>1.500 이하</td> <td>1.800 이하</td> <td>2.400 이하</td> </tr> <tr> <td rowspan="2">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공동주택</td> <td>1.600 이하</td> <td>1.800 이하</td> <td>2.500 이하</td> </tr> <tr> <td>공동주택 외</td> <td>1.900 이하</td> <td>2.200 이하</td> <td>3.000 이하</td> </tr> <tr> <td rowspan="2">공동주택 세대현관문</td> <td>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1.400 이하</td> <td>1.600 이하</td> <td>2.200 이하</td> </tr> <tr> <td>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td> <td></td> <td>1.800 이하</td> <td>2.000 이하</td> <td>2.800 이하</td> </tr> </tbody> </table> <p>■ 비고</p> <p>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p> <p>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p>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제주도	지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제주도																																																																																									
			지역	중부지역 ¹⁾	남부지역 ²⁾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p>624페이지 (2) 운영기관의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관련 통계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p>625페이지 ② 심사전문인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삭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삭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p>627페이지 (1) 인증신청 1) 신청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data-bbox="459 1048 662 120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 신청자</td> <td data-bbox="667 1048 1477 1200"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td> </tr> <tr> <td data-bbox="459 1207 582 1449"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 신청 시기</td> <td data-bbox="587 1207 662 1449"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판 인 기 간</td> <td data-bbox="667 1207 1477 1449"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사용승인 후 (삭제) · 주택법 사용검사 후 </td> </tr> <tr> <td></td> <td data-bbox="587 1323 662 1449"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예 비 인 간</td> <td data-bbox="667 1323 1477 1449"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설계도서 작성 후 (삭제) </td> </tr> </table>		1.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 시기	판 인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사용승인 후 (삭제) · 주택법 사용검사 후 		예 비 인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설계도서 작성 후 (삭제)
1.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 · 건축물 소유자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 시기	판 인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사용승인 후 (삭제) · 주택법 사용검사 후 									
	예 비 인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설계도서 작성 후 (삭제) 									
<p>참고</p>	<p>참고 p627~629까지 전체 삭제</p>										
<p>630페이지 (2) 인증처리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처리기한</th> </tr> </thead> <tbody> <tr> <td>1.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일 이내</td> </tr> <tr> <td>2. 1호 이외의 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일 이내</td> </tr> </tbody> </table> <p>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①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삭제)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③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건축주 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제①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구분	처리기한	1.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20일 이내	2. 1호 이외의 건축물	40일 이내			
구분	처리기한										
1.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20일 이내										
2. 1호 이외의 건축물	40일 이내										

해당 페이지	정 오 표 (파랑색 글씨-수정된 부분)																																												
<p>630페이지 7 인증심사절차</p>	<p>②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인증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p> <p>④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631페이지 8 인증기준</p>	<p>③ 제①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건축물과 5년이 지난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준 및 등급 - 삭제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표 변경 	<p>■ 인증등급별 점수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80 943 1461 1637">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최우수 (그린1등급)</th> <th>우수 (그린2등급)</th> <th>우량 (그린3등급)</th> <th>일반 (그린4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신축</td> <td>주거용 건축물</td> <td>74점 이상</td> <td>66점 이상</td> <td>58점 이상</td> <td>50점 이상</td> </tr> <tr> <td>단독주택</td> <td>74점 이상</td> <td>66점 이상</td> <td>58점 이상</td> <td>50점 이상</td> </tr> <tr> <td>비주거용 건축물</td> <td>80점 이상</td> <td>70점 이상</td> <td>60점 이상</td> <td>50점 이상</td> </tr> <tr> <td rowspan="2">기존</td> <td>주거용 건축물</td> <td>69점 이상</td> <td>61점 이상</td> <td>53점 이상</td> <td>45점 이상</td> </tr> <tr> <td>비주거용 건축물</td> <td>75점 이상</td> <td>65점 이상</td> <td>55점 이상</td> <td>45점 이상</td> </tr> <tr> <td rowspan="2">그린 리모델링</td> <td>주거용 건축물</td> <td>69점 이상</td> <td>61점 이상</td> <td>53점 이상</td> <td>45점 이상</td> </tr> <tr> <td>비주거용 건축물</td> <td>75점 이상</td> <td>65점 이상</td> <td>55점 이상</td> <td>45점 이상</td> </tr> </tbody> </table> <p>■ 비고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을 따른다.</p>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p>9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p>	<p>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p>																																												

